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의안번호 : 제162호
- 제안일자 : 2005. 6. 22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 이유

- 2003. 7. 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과 보건의 연계로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해야 하고,
-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함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1인을 호선하여 민·관 공동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주사 및 보건소 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함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6조, 제7조)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간사 및 직원(안 제8조)

-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회의 등 (안 제9조)

- 각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함.

○ 회의수당 및 협의체운영지원(안 제14조, 제15조)

-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 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표준안(보건복지부)
[서울시사회과-12987(2004. 9. 24)]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강동구, 양천구, 강북구, 동대문구, 서초구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2003. 7. 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로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05. 7. 31 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 기타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임명직 및 위촉직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1인을 호선하여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안 제9조 내지 제13조는 각협의체 회의운영 및 안건에 대한 의결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안 제8조 제3항을 보면 각 협의체에 운영지원을 위한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바 이는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일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바 상근 유급직원을 두어야 할 만큼의 업무량과 필요성이 있는지 또 협의체 지원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7. 4

보 고 자 : 이 남 식